

【 8 】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1998. 11. 13.

제 안 자 : 김영안의원외 2인

□ 제안이유

- 양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의 군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부서명칭을 조정하고자 함.
-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대상자별과 위반행위별로 하여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대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군립도서관을 삭제함.
-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3호)
-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안 제5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의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과태료)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련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 등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양주군 공무원(이하 “집행부공무원”이라 하며, 감사·조사대상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제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감사·조사대상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위임·위탁단체·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파면 및 퇴직한 사람과 민간인(“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②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 ③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양주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⑤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⑧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주군 공무원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제1호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출석요구불응2회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불응1회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1회	25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25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1회	15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표2]

위임 · 위탁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제2호 관련)

위반행위별	과 태 료
출석요구불응2회 이상	400만원 이하
출석요구불응1회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1회	30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1회	20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표 1]

양주군 공무원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출석요구불응2회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불응1회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1회	25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25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1회	15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표2]

위임 · 위탁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출석요구불응2회 이상	400만원 이하
출석요구불응1회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1회	30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1회	20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표3]

민간인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 제4호 관련)

위반행위별	감사 · 조사대상 사건 · 사고관련 직접당사자	감사 · 조사대상 사건 · 사고관련 간접당사자	기타
출석 요구불응 2회 이상	3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출석 요구불응 1회	3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증언 전체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증언 전체거부 1회	2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증언 일부거부 2회 이상	2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증언 일부거부 1회	2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 3. <u>농촌지도소</u> 4. (생략) 5. <u>균립도서관</u> 6. <u>상수도사업소</u> 7 - 9 (생략)</p>	<p>제5조 (감사 또는 대상기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농업기술센타</u> 4. (현행과 같음) 5. <u>(삭 제)</u> 6. <u>상하수도사업소</u> 7 - 9 (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⑥ (생 략)</p> <p>제9조의 1(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③ (생략)</p>	<p>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 1(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 2(과태료)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련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등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양주군 공무원(이하 “집행부공무원”이라 하며,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2. 제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3. 감사·조사대상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위임·위탁단체·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파면 및 퇴직한 사람과 민간인(이하 “민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p>
(신 설)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양주군수(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 암	
	[별표 1] 양주군 공무원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출석요구불응 2회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불응 1회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 1회		25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 2회 이상		25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 1회		15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임 ·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 2 제1항 제2호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출석요구불응 2회 이상	400만원 이하
	출석요구불응 1회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전체거부 1회	30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일부거부 1회	20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p>[별표3]</p> <p>민간인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 제3호 관련)</p>			
(단위:만원)				
위반행위별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관련 직접당사자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관련 간접당사자	기 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350만원 이하	200만원이 하	5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증언전체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증언전체 거부 1회	2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증언일부 거부 2회 이상	2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증언일부 거부 1회	2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비 고〉				
<p>1. 출석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p>				